

#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

[시행 2017.7.13.] [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-59호, 2017.7.13 제정]



## 제1조(목적)

이 고시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」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과 발효처리 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시설의 종류)

「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」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또는 발효처리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발효처리하려는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열처리 시설 :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[별표 5]에 따른 이동식 열처리 장치
2. 발효처리 시설 : 축산농장 내 또는 인근에 설치된 발효처리 시설 또는 장치(이동식 발효처리 시설 또는 장치를 포함한다)

## 제3조(발효처리 승인)

①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(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) · 군수 또는 구청장(이하 "시장 · 군수 · 구청장"이라 한다)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발효처리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하려고 할 때(가축 소유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별지 서식의 가축 사체 발효처리 승인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시 · 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의 처리계획을 검토하여 가축전염병 전파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승인 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 · 도지사(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요청하거나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의 처리계획을 수정 · 보완하는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.
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처리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 전파 가능성 등에 관한 기술적·학술적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제2항 후단에 따라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요청 받은 시·도지사 또는 처리계획의 수정·보완을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요청사항 또는 수정·보완 조건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.

## 별지서식

가축 사체 발효처리 승인 신청서					
농장명 (농장주)		축종		사육 두수(수수)	
농장 주소					
해당 가축전염병		실처분 대상 두수(수수)			
재활용 사유					
「가축 사체를 재활용 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」제3조제1항에 따라 상기 농장의 가축 사체 발효처리 승인을 신청합니다.					
20 년 월 일 신청인 : ○○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생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					
첨부서류	1. 가축 사체 처리계획 : 처리일시[기간], 장소, 방법, 해당 병원체 사멸 확인방법 등 2. 발효처리 시설[장비] 제원 및 특성 : 처리용량 및 시간, 해당 병원체 사멸원리 등 3. 발효처리 생산물 처리계획[재활용 계획]				